

쟁점으로서의 건강가정과 건강가정기본법

송 혜 림(울산대학교 부교수) · 성 미 애(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강사) ·
진 미 정(서울대학교 조교수) · 이 승 미(우석대학교 부교수)

본 연구는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하여,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의 조항과 내용, 지향하는 이념, 건강가정의 개념,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정책적 대상과 범주 등에서 쟁점화되어 온 이슈를 중심으로, 이러한 쟁점이 야기되는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고,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상함으로써,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및 나아가서 가족정책 전반에 걸친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.

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세부적 조항과 관련된 쟁점보다는 보다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지향성 및 이념이라는 배경 하에 건강가정의 개념과 범주, 이와 관련하여 가족/가정의 개념과 논의점으로 나누어 쟁점별로 접근하고자 한다.

첫째, 건강가정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'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'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, 비건강가정과의 이분화, 전형적인 핵가족모형, 전근대적인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 이를 소위 '건강가정담론'이라는 맥락에서, 이러한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 등을 살펴보고,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내포하는 건강가정의 본질적 의미,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법의 이념과 지향성이 반영되고 이러한 의미가 부각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.

둘째, 첫 번째 논의점과 관련하여 '가족' 그리고 '가정'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.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, 실태로서의 가족/가정과 제도에서의 가족/가정이 함의하는 바의 다양성 그리고 차별성에 주목하여 가족, 가정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,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무엇을 주된 대상 혹은 범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.

이와 같은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보다 내실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,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